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

① **(지원대상)** ^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, ^②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(1억5천만원 미만) ^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(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) 등

② (지원수준)
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**연 150만원**(5년간 225만원 한도)
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**연 200만원**(5년간 300만원 한도)
 - *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. 단, 평생교육, 사회복지, 문화예술, 부동산, 청소·세탁, 이·미용, 결혼·장례, 스포츠, 음식, 제과.제빵 등 일부과정은 40% 자비부담
- ③ (유효기간) 3년
- 4 (지원 훈련과정) 근로자・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(HRD-net에서 확인 가능)
- 5 (지원 방법)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www.hrd.go.kr)

< 온라인 신청 방법 >

❖ www.hrd.go.kr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MY서비스 → 공인인증서 등록/변경 → 공인인증서 등록 → 행정서비스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근로자카드 → 근로자카드신청 → 고용센터 서류심사 → 카드사 카드발급(약 10일 소요)

⑥ (입증 제출서류)
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근로계약서(또는 재직증명서), 근로내용확인신고서(또는 출근대장),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
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(필수, <u>단 간이과세자, 휴업신고자는</u> 1년 미만 가능) 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위탁(도급)계약서, 위촉(재직)증명서, 사업 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월별급여내역 등
 - ※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☎ 1350) 또는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 개발팀(☎ 055-239-0980)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
< 자주 묻는 질문 >

- Q1 우리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지만 저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대상이 되나요?
- A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Q2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도 대상이 되나요?
- A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.
- Q3 1억 5천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?
- A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Q4 프리랜서 형태인 학습지교사는 대상이 되나요?

영리를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가능하고 1년간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- A 다만, 월 평균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.
 - * 보험모집인, 건설기계 소유 기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대리운전기사, 판매업자 등이 해당
- Q5 훈련장려금은 있나요?
- A 훈련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Q6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?
 - o HRD-Net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
 - * 주요 과장 일반사무, IT, 전기기능사, 사무자동화, 회계, 요양보호사, 용접, 기계기술 등
 - o 일반실업자훈련 과정도 수강이 가능하므로 실업자훈련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.



Α